

#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1. 17일 김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11. 25

다. 상 정 일 자 :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( '97. 12. 22 )  
총무위원회에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 제안설명 :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)

가. 제 안 이 유

○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·시행( '96. 7. 1 )에 따라 각지방자치 단체와 그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○ 주 요 골 자

기금조성의 재원중 ~독지가 성금~을 삭제함

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○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1조 ~ 제5조 및 동법 시행령등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#### 4. 결의 및 답변

- 없 음

#### 5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 위원중 8 명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